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206900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나42221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206900 판결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론 종결 2020. 12. 2

판결 선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 23. 접수 제870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 11. 16. 소외 D 에게 50, 000, 000원을 이자 연 14. 9%, 지연이자 연 17. 9%, 변제 방법 2023 . 11. 1. 까지 매월 1일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은 2020 . 1. 1. 부터 위 대여금채무의 분할상환금을 2회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2. 11. 현재 남은 대여원리금은 합계 43,034,094원이다.

다. D 은 2019 . 12. 23. 어머니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2019 . 12. 19.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 인하여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사해 행위라고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당시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돈으로 매입하여 D으로부터 월 2,000,000원씩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D에게 명의 신탁한 토지인데, D이 매월 지급하기로 한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증여의 형식으로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 1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D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월 2, 000, 000원씩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D 앞으로 소유권을 마쳐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가 그 구입자금을 부담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보다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전에 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2)피고는 다음으로,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피고는 원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 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선의인지 여부는 그 선의임을 주장하는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이 때 그 사해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일방적인 진술이나 제 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되는 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 0판결 등 참조)w 피고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주문제2항기재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남세진

별지